

구매물품보상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기타) - 기타

2. 보험종목의 명칭 : 구매물품보상보험

3. 보험의 목적

1)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손해

4. 보험기간

- 1) 보험기간 : 운송기간
- 2)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없음

7. 기타

- 1)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 없음
- 2) 판매채널 : 범용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
- 3) 단체취급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개별 피보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장내용(불안전판매 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상품)으로 설계한다.
 - ② 제 3종단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상으로 한정한다.
 - 대상단체 : 제 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고 그 회원명부에 등재 또는 서면, 온라인 등에서의 가입의사 표시에 따라 구성된 단체(동호회, 동문회, 카드사 회원, 온라인 사업체 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만,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 중 피보험단체는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한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단일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책임개시일 등 주요내용을 가입증명서 등에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단체취급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 4)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 ②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한다.
 -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 ⑤ 개별 보장기간에 대해서는 운송장번호가 회사에 고지된 순간부터 보장이 개시되어 상하차 위험을 포함한 모든 운송기간 동안 지속되며, 목적물이 운송장에 명기된 받는 사람(수하인)의 주소로 운송되는 시점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자정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보장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단, 운송장번호가 회사에 고지되기 전에 운송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표기된 운송 개시시점을 보장개시 시점으로 한다.